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1. 20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4조)
- 학대예방 교육(안 제5조)
- 학대예방 홍보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- 시행규칙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, 학교장으로 하여금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,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였음.
- 최근 가정 내 학대로 인하여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